

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5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1.
- 다. 상정일자 : 2001. 10. 18 제8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「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변경안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함.

3. 주 요 결 자

- 가. 미탄궁도장 인접토지 매입
☞ 【취득(토지) 1필지 873㎡】
- 나.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
☞ 【취득(토지) 3필지 3,363㎡ 취득(건물) 4동】

4. 검 토 결 과

- 「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3차변경의 안」은
취득으로 토지매입 2건 4필지 4,236㎡ 80,178천원,
건물 1건 4동 826㎡ 112,391천원입니다.

가. 미탄궁도장 인접토지 매입

- 2001년 하반기 의회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으로 미탄궁도장 주변토지 873㎡를 추가 매입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정규대회 규격의 궁도장을 시설

코자 하는 것입니다.

나.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

- 대화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제정된 관련조례와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투자되는 사업비로 4개 마을의 마을회관겸 경노당을 신축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건물4동과 건축부지 3필지임.
-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의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